

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2020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2. 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35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19. 11. 15.(금)
- 라. 회부일자 : 2019. 11. 15.(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0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표1) 2020년도 운용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성액 ㉑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㉒=㉑+㉓-㉔)	증 감 ㉕=㉒-㉑
		수입㉓	지출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42,285	22,700	14,420	450,565	8,280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5. 검토의견

가. 기금 개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음.

1) **재원조성** : 전년도 이월금, 용자금 상환금, 정기·공공예금 이자 등

2) **지원기준**

- 환경미화원 1인의 모든 자녀
- 실제 등록금 납부범위 내 지원,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3) **지원대상**

- 금천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자녀가 국내의 대학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나. 기금조성 및 운용

- 2020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총 조성규모

(표2) 2020년도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용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 규모	비 고
450,565	208,700	659,265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056만 5천원이고 용자금 미회수채권 2억 870만원을 포함하여 총 조성 규모는 6억 5,926만 5천원임.

○ 2020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자금수지총괄

(표3) 2020년도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합 계	464,985	426,066	계	464,985	426,066
용자금회수	20,200	56,225	비용자성사업비 (위원회 참석수당)	420	420
예치금회수	442,285	365,341	용자성사업비 (학자금 대여)	14,000	42,000
이자수입	2,500	4,500	예 치 금	450,565	383,565

2020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은 용자금회수 2,020만원, 예치금회수 4억 4,228만 5천원, 이자수입은 2,500만원으로 총 4억 6,498만 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위원회참석수당 42만원과 학자금대여비 1,400만원, 예치금이 4억 5,056만 5천원으로 지출총액은 4억 6,498만 5천원임.

다. 검토 결과

2020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비용자성사업이 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만 있으며 기금의 이자수입 2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학자금 대여금이 1,400만원이나 용자금회수수입금은 2,020만원으로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됨.

붙임 : 관련 법령 1부.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785호, 2014.10.20., 일부개정]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